

#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

제정 2020. 3. 10.

개정 2020. 8. 4

개정 2022. 4. 1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(이하 “회칙”이라 한다.) 제3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운영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회비의 종류 및 납부원칙)**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설계업무 운영회비

가. 「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」에 따라 회원이 대구광역시 내 건축물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납부하는 운영회비

나. 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운영회비

2. 감리업무 운영회비

가. 「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
나. 「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
3. 「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

4. 기타 건축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회비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운영회비는 별표1과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합계 금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3조(운영회비의 감면)** 제2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적은 목의 운영회비는 감면한다.

**제4조(미납에 대한 조치)** 운영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관 및 제규정, 회칙 등

을 준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유권해석)**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7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연간한도에 관한 규정 적용)** 제2조제3항의 연간한도 금액은 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의 납부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(2020. 8. 4. 개정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허가신청분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2. 4. 12. 개정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 운영회비의 종류와 납부금액

종 류	납부금액	비 고								
1. 설계 운영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0원/㎡</li> <li>- 대수선허가, 용도변경허가, 가설건축물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0원/㎡ 와 설계비의 1% 중 적은 금액을 적용</li> <li>- 공장, 창고용도 건축물 운영회비의 1/2</li> <li>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</li> </ul>	「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」 제4조								
2.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 운영회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면 적</th> <th>운영회비(원/건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60㎡ 이하</td> <td>100,000</td> </tr> <tr> <td>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</td> <td>150,000</td> </tr> <tr> <td>1,000㎡ 초과</td> <td>2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면 적	운영회비(원/건)	660㎡ 이하	100,000	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	150,000	1,000㎡ 초과	200,000	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 제12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3조 [별표 2]
	면 적	운영회비(원/건)								
	660㎡ 이하	100,000								
	660㎡ 초과 ~ 1,000㎡ 이하	150,000								
1,000㎡ 초과	200,000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자가 협회미가입자 또는 타지역 회원인 경우, 시스템 사용 및 종 자료 열람에 따른 운영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.</li> <li>-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문대상일 경우, 상기 운영회비의 50%를 적용한다.</li> <li>- 자문대상이 대수선일 경우, 면적에 관계없이 최저 운영회비를 적용한다.</li> </ul>										
3. 건축물 공사감리업무 운영회비(허가권자 지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리비의 5%</li> <li>- 기존 감리비의 10%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.</li> <li>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</li> </ul>	「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」 제9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2조 [별표 1]								
4. 건축물 공사감리업무 운영회비(허가권자 지정 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0원/㎡</li> <li>- 공장, 창고(농·축·수산)용도 건축물 운영회비의 1/2</li> <li>- 연면적합계가 10%이상 증감된 경우, 증감되는 연면적합계가 50㎡ 이상일 경우, 계약금액에 5%이상 증감될 경우 재산정</li> <li>-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.</li> </ul>	「대구광역시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 및 「운영세칙」 제7조, 「운영지침」 제4조								
5.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영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가권자가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3%</li> </ul>	「건축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」 제9조, 제10조 및 「시행지침」 제2조 [별표 1]								

※ 상기 운영회비 각각의 건당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며, 회계연도 기준 총합산금액은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